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665-10



www.mohw.go.kr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www.ssc.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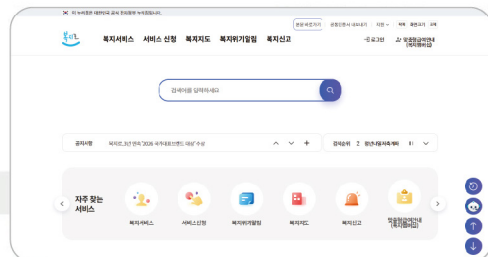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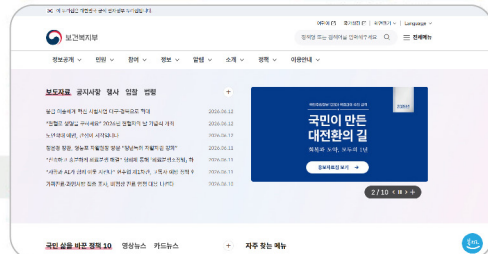
www.ssc.go.kr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ww.mohw.go.kr



www.bokjiro.go.kr



본 책의 내용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목차



장애인

건강

01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8
02	발달재활서비스	9
03	의료급여 제도	10
04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1
05	장애인 의료비 지원	12
06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3
07	장애친화 건강검진	14
08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5
09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6
10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7

임신·출산

1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8
12	출산비용 지원	19

양육

1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20
1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21
15	아이돌봄서비스	22
16	언어발달 지원	23
17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24
18	장애아 보육료 지원	25
1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6
20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7
21	장애아동 양육수당	28
22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29
23	장애아동수당	30

교육

24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31
25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32
26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33
27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34
28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35
29	장애인 정보화교육	37
30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38

주거

31	장애인 주택 개조	39
32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40

생활지원

33	긴급복지 지원제도	41
34	무료 법률구조 제도	43
3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44
36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45
3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46
38	장애수당	47
39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48
40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49
41	장애인 등록신청	50
42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51
4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52
44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53
45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54
4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55
4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56

CONTENTS 목차



장애인

생활지원

48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57
49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8
50	장애인연금	59
5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60
52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61
53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63
5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64
5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65
5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66
57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67
58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68

돌봄(안전·활동지원)

59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69
60	수어통역센터	70
6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71
62	장애인 복지관	72
6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73
64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74
65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75
66	장애인 체육시설	76
67	장애인 활동지원	77
68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78
69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79
70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80
71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81

고용

72	보조공학기기 지원	82
7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83
74	장애인 근로지원인	84
75	장애인 일자리 지원	85
76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86
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87
78	장애인 창업육성	88
79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89
8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90
8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91
8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무상지원	92
83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93
84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94
8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95
8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96
87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97
88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98
89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99
90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100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2. 내용**
- |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월 16만 원)을 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서비스

- |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43만 2,308원, 지역 40만 4,529원)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20세 미만까지 가능
- | 내용**
 - 매월 18~26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센터,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 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
- |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 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한자, 이재민, 노숙인, 타법 수급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85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태아 당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신청

-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유산보유자는 국가유산청(☎1600-0064)에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 |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 |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 진료 추천서를 제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친화 건강검진

- |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전국 30개소) 방문하여 검진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 [서울] 국립재활원(☎02-901-1400)
 - [서울] 서울적십자병원(☎02-2002-8000)
 - [부산] 부산의료원(☎051-507-3000)
 -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 [부산] 연제일신병원(☎051-978-2066)
 - [부산] 좋은삼선병원(☎051-310-9333, 9587)
 - [대구] 대구의료원(☎053-560-7397)
 - [인천] 인천의료원(☎032-580-6037~6038)
 - [대전] 대청병원(☎1899-6075/내선 2번)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 [경기] 성남시의료원(☎031-738-7007)
 - [충북] 청주의료원(☎043-279-2690)
 - [충북] 충주의료원(☎043-871-0114)
 - [충남] 천안의료원(☎041-570-7114)
 - [충남] 서산의료원(☎041-689-7166)
 - [전북] 남원의료원(☎063-620-1160)
 - [전남] 순천의료원(☎061-759-9131)
 - [전남] 목포시의료원(☎061-260-6500)
 - [전남] 강진의료원(☎061-430-1194)
 - [전남] 장흥통합의료원(☎061-860-7777)
 -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00)
 -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570)
 - [경남] 조은금강병원(☎055-330-0222, 0223)
 - [경남] 밀양병원(☎055-351-3993)
 -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 [제주] 제주중앙병원(☎064-786-7282)
 -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7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경기북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남부] 분당서울대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광주] 전남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부산] 동아대병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대상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장애인

• 주장애·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

| 내용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함

| 방법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별기관찾기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지역 등 선택 → 검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비스 확대

- 방문재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됩니다(2026.7.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비용 지원

|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20만 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내용**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 | 방법**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 내용**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 방법**
 - (평일 주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 (야간·주말·공휴일·당일접수)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 접수
- | 문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시간제 서비스 연간 1,080시간 지원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0~12세, 시간당 12,79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2,790원)	
		A형(2018.1.1. 이후 출생)		B형(2017.1.1. 이후 출생)		0 ~ 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	1,918원 (15%)	10,232원 (80%)	2,558원 (20%)	10,872원 (85%)	1,918원 (15%)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6,396원 (50%)	6,394원 (50%)	7,674원 (60%)	5,116원 (40%)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3,198원 (25%)	9,592원 (75%)	3,838원 (30%)	8,952원 (70%)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1,280원 (10%)	11,510원 (90%)	1,920원 (15%)	10,870원 (85%)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방법 • 직접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누리집 :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idolbom.go.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 |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8만 4951원, 지역 23만 3292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 | 내용**
 - 매월 18~24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대상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317,000원)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최대 월 317,000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장애아 보육료 지원

- |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 |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63만 4,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8만 4951원, 지역 23만 3292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내용** 어린이집의 기본·연장보육 외에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등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5:30~07:30 포함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내용	대상	24~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수당

|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제외)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 원	월 3만 원

|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 |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 | 문의 교육부(☎02-6222-606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대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원)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 지원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 교정사, 화면해설사 등 전문인력 활용 지원
원격 프로그램 운영	자막 제작, 화면해설 제작, 실시간 속기·문자통역 등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이용 지원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대학(원)에서 교육지원인력원격 프로그램을 선발·운영하고 경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문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915-7601)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 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
- | 내용**
 - 대상 대출 : 장애정도별 최초장애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학자금유예대출, 구상채권)
 - ※ 최초장애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제 불가
 - 소득 조건 :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면제 범위 : 장애정도 및 소득조건에 따라 대출 잔액 원금의 30%~90% 면제
 - 면제 방법 : 면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
-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230, 2250, www.kosaf.go.kr

자주 하는 질문

모든 장애인이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중 ① 최초장애판정 이전 학자금대출 실행,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 |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 |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대상 • 교육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장애 유형(필수)
 -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 면허 소지자
 -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 ② 운전면허 조건: F
 -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A : 자동변속기, D : 보청기, E :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 우측방향지시기, I : 왼쪽엑셀레이터

| 내용 • 교육목적

운전보조기기 사용이나 수어로 된 교육이 필요하여 민간 운전학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을 제공

• 교육과정별 운영방법

- ① 면허취득과정: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찾아가 교육 제공
- ② 도로연수교육: 교육생의 거주지 등 희망 장소로 찾아가 교육 제공
- ③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교육 진행

|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자주 하는 질문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증 취득교육,
- 있는 경우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으로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체험이 가능한가요?

- 장애 상태에서의 안전 운전 가능 여부와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을 체험하고 싶다면, 국립재활원에 전화 상담 및 예약 후 내원하여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교육 시간, 비용,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은 평일 기준 과정당 8시간, 4일 이내 진행됩니다.
-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근 도로에서 진행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제1종 보통(수동·자동), 제2종 보통(자동) 면허 교육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및 자동차 보조기기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교육지원-장애인 운전교육
- 유튜브 : 국립재활원 - [장애인 운전] DoDoDo it Drive
- 네이버블로그 : 국립재활원(하이재활) - 장애인운전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장애인정범위확대

- 기존 : 지체, 뇌병변, 청각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인정)
- 변경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경우 즉, 장애인등록증 대신 의사소견서도 인정

• 면허조건확대

- 기존 : E, F, G, H, I
- 변경 : A(저신장, 왜소증), D(청각), E, F, G, H, I
즉, A, D 조건추가로대상범위확대



장애인 정보화교육

| 대상 등록 장애인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방법 시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시디지털배움터(디지털배움터.kr), 정보화상담실(☎1588-2670)
- 장애인정보화교육 메일(able@nia.or.kr)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 교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

| 내용 특수교육 교육과정, 멀티미디어북, 디지털·진로·인권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 등 장애학생 교수·학습 자료 제공

|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 (시각장애 대체자료) 시각장애 교원과 학생을 위한 교과서, 지도서, 참고도서, EBS 방송교재 등
		• (교육과정 자료)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등
		• (수업 지원자료) 멀티미디어북, 교수·학습 영상 등
		• (디지털 교육자료) AI·SW교육, 실감형 콘텐츠(AR, VR), 무인정보 단말기 등
		• (진로·인권 자료) 인권 보호, 직무교육 진학지원, 장애공감 등 콘텐츠
열린배움터	aiclass.nise.go.kr	학생을 위한 AI 기반 국어, 수학 콘텐츠(앱) 관리 기능 및 수업 설계를 위한 부가 기능 제공 ※ 학습 리포트, 추천 학습, 퀴즈 제작, 쌍방향 온라인 수업 설계 등

|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교육지원과 ☎041-537-1485



장애인 주택 개조

-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 |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 |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만 3,179원, 4인 기준 487만 1,054원)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56만 4,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249만 4,000원 이하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99만 4,6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 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무료 법률구조 제도

- |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811만 8,423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 | 내용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20만 원, 2인 40만 원, 3인 이상 60만 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각·청각장애이용 TV보급)

- | **대상**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자
- | **내용**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맞춤형 TV 보급(선정 후 보급)
- |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 시각 청각장애이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 |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알려드립니다

시각·청각장애이용 TV란?

➔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 자막크기확대, 음성의 높낮이,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 | 문의** 산업통상부 콜센터(☎1577-0900)



장애수당

- |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중전 1급, 2급, 3급 중복)

-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6만 원	월 6만 원	월 3만 원

- |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 대상**
 -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 : (성인)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 |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 방법** 읍면동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2024.2월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 월액이 3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기기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 |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 방법**
 - 먼저 병원 진료를 통해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및 해당하는 경우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해당품목*),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활동형, 킬링형, 리클라이닝형, 유모차형), 몸통지지보행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수동·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청

» 알려드립니다

○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내용 46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촉각시계,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심장 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신호장치, 진동시계, 소리증폭기,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수동조작용 팔 지지대(책상 고정형), 전동칫솔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 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지체·뇌병변·지적·자폐 장애인	기억 지원 보조기기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 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 대상 등록 장애인

|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최종증 통합돌봄) ② 이동지원 분야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의 자동차
- |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내용 자립자금을 고정금리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이 2천만 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자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①, ②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며, 별도 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받은 융자금으로 대신 상환하는 방식 불가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KB국민은행)의 내부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상담 필요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대상 등록장애인
- | 내용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 |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연금

|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중전 1급, 2급, 3급 중복)

| 내용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로 소득이 감소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6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8세 ~ 64세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43만 9,700원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43만 9,700원 • 부가급여 43만 9,7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42만 9,700원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8만 원	8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차상위 초과	37만 9,700원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3만 원	5만 원 • 부가급여 5만 원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됨(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중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것이 확인될 것
 -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확인 가능
- | 내용**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에 한하여 감면하고,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 | 방법**
-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
- | 문의**
- 행정안전부(☎044-205-3859, 3862)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① 지문인증방식: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하절기 2만 원)	『한전ON』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또는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 | 내용** 검사 실비 지원(최대 10만 원)
- |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 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전액 지급
 -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 |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 ① 시각장애 : 영상확대시스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 ③ 청각·언어 장애 : 영상 전화기, 대화용 장치, 음성증폭기 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방법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차상위계층 등
- | 내용**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5~30% 지원(가구당 30만 원 한도)
*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
※ 전기요금 복지할인 선신청 필요
- | 방법**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 통해 온라인 신청
- | 문의** 고객센터(☎1551-121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 |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1년 지원(연장불가)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문의** 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대상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 내용

- 월 132/176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수어통역센터

|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 방법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 문의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 |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 |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대상 등록장애인

|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 대상 등록장애인

|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장애인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시각장애인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00,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500,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 | 대상 등록장애인 등
- | 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 |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 신청
-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활동지원

- |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104만 원 ~ 최대 829만 3,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38만 5,000원), 자립준비(34만 9,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4만 9,000원)
 -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 | 문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대상** 6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 | 내용**
 - 월 66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 | 대상** 예비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예술인(단체), 비장애예술인(단체)
- | 내용**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사업유형: 장애예술 창·제작 활동, 교류활동, 향유활동, 유통 및 확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kdac.or.kr)에서 상세 자료 확인 가능
- |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 접수
- | 문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02-760-9725, 9713, 9753)

자주 하는 질문

어떤 시스템을 어느 시점에 써야 하나요?

➔ 지원신청 및 결과발표 확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가능하며, 교부 및 정산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단체를 위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비 장애예술단체는 어떤 유형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과 장애예술 첫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A단체의 대표입니다. A단체로 지원신청 할 경우 대표인 저는 개인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 지원신청 주체가 단체와 개인으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무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성공수당 지원
-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고용 사업주로,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신규 고용 전제로 지원

| 내용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

- 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구분		지원액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가격 (맞춤형 기기 포함)	130만 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130만 원 초과	130만 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 원) × 9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증권 가입 → 사후관리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근로지원인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내용 지원단가 : 시간당 10,32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2,384원)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

| 방법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내용 • 일자리 유형별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215만 6,88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107만 8,44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57만 7,92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35만 1,92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35만 1,920원

• 근무기간 : 1년 단위(1월1일~12월31일)로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계속 참여 가능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등 수행기관의 면접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1~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6개소), 디지털훈련센터(13개소),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통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식비	•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300시간(3개월), 600시간(6개월) 및 1,200시간(12개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내용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

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자 기준	-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유지)	-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80% 이상 유지)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발달장애인 80% 이상 유지)
근로·임금 기준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훈련만 실시

| 방법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



장애인 창업육성

|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등

|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온라인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협동조합교육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이해와 운영 지원
	시각장애인 창업교육	시각장애인 창업절차 및 성공사례 등 맞춤형 교육 지원
오프라인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등 비용 지원
보육실입주지원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 방법 창업넷(<https://start.debc.or.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 창업지원 사업 신청(사업화, 점포 등)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자주 하는 질문

온라인 창업교육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창업넷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세부 과목(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등) 중 수강하려는 교육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3년 미만)
- | 내용**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계약(2~3년) 후 연장 시 최대 5년간 지원
- | 방법**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희망점포 감정평가 → 점포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지원
-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자주 하는 질문

창업점포지원 신청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만 18세 이상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참여수당 15만 원(1단계 필수) 지급
2단계 (구직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1단계 수료 장애인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기타 훈련과정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지급 ※ 지원고용 참여 시 일 35,000원
		커리어플러스 프로그램 수료 (기본형, 심화형, 온라인 교육, AI모의면접,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별 수당 5만 원 ~ 10만 원
		[저소득층] 구직활동 계획 이행 시 [저소득층] 구직활동 중 조기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 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120만 원
3단계 (고용안정)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 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 원 지급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 | 내용**
- 26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 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 생산,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 원 이내 추가 지원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각종 인증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000만 원)
- |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무상지원

-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내용**
 - (융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 비용에 대한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이차보전을 최대 5%, 사업주당 융자금 15억 원 한도)
 - 융자금 1억 원 당 장애인 1명을 5년간 고용(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
 -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방법**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심사, 결정 → 투자 확인 후 지급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은행대출금리에서 이차차액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장애인근로자 중 중증 15% 등*)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사업장 인원 요건과 동일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학원,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내용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지원, 맞춤형 직접지원, 정책정보제공 등 전국 16개 지역센터 운영

• 전국 16개 센터 내 123개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보증금 10만 원/평, 입주부담금 관리비(1만 원/평/월) 및 전기료 사용실비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제공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기업 CEO 및 지역 유관기관 담당자)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전용 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71, www.debc.or.kr)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재가장애인,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일반국민
- |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생산시설의 판매활동과 유통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 | 방법**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누리집,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 문의** 각 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의해 '중점 고용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장애인
- |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수당 1일 3만 5,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
-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직업상담·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주요프로그램
직업지도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	직업 상담 재활계획 수립
직업평가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신체능력평가 상황·현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	개인/사회 적응훈련 직업준비/수행훈련 직무능력 향상/직업유지 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 실시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 알선, 직업배치 제공 → 취업 후 직업 안정을 위해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 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의 필요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1.1% 우선구매 혜택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발굴 및 판로개척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해야 함

| 방법 사업주가 생산시설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심사 및 생산시설 지정 통보 → 생산시설별 생산품 납품 등 시설 운영

- | 문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증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http://www.goods.go.kr>)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 대상 등록 장애인

| 내용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방법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 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ttps://hub.kead.or.kr/ve>)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형훈련센터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 **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 | **내용**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월 7만 원 한도)
- |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결정 → 전용카드 발급(은행) 및 등록(공단) → 사용금액 정산 후 지급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대상**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 **내용** 지원 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
 대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펴낸곳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
범부처정보관리부

인쇄 2026년 6월 30일

디자인 덕성기획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665-10

※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